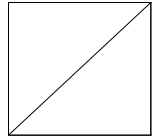


II

의결안건



의안번호	제2호	의 결 사 항
의 결 년 월 일	2023. 3. 2. (제53차)	

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(안)

이사회 안건

제 출 자	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 고치범
제출년월일	2023. 3. 2.

I 의결주문

- (재)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II 제안이유

- (재)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관 제30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동 건을 제안함

* 정관 제3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III 의결정족수

-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(정관제31조제1항, 제3항)

IV 주요내용

□ 개정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수행업무 중 미 반영된 업무의 보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함

□ 주요내용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미 반영된 “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” 업무를 사업에 포함하고 일부 각호를 정비하고자 함 (안 제4조)

- 원장의 유고·결위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직제 순으로 원장직무 대행을 하도록 하고, 단서에서 필요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

붙 임 : 정관 일부개정(안)

(붙임1)

정관일부개정(안)

○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사업) 제1항 3호 중 “교육·홍보”를 “교육 및 홍보”로 5호 중 “친환경 장례지원”을 “장례지원”으로 하고, 6호에 “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”을 신설하고, “6호”를 “7호”로 “7호”를 “8호”로 “8호”를 “9호”로 한다.

제23조(이사장과 원장의 직무대행) 제1항 중 “이사”를 “선임된 이사”로 제3항 중 “이사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”를 “진흥원의 직제에 따른 차급자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붙임2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p>제4조(사업)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2. 장사정책(법령) 지원 및 상담 3.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와 관련한 연구·조사, <u>교육·홍보</u> 4. 장례문화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5.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친환경 장례 지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. 장사시설 현황 조사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7.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8. 그 밖에 장사정책 및 문화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<p>제23조(이사장과 원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<u>이사</u> 중 연장자 순</p>	<p>제4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-- 3. ----- -----, <u>교육 및 홍보</u> 4. ----- ----- 5. <u>국내외 재난 발생 시 장례 지원</u> 6. <u>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</u> 7. ----- ----- 8. ----- ----- 9. ----- ----- ----- <p>제23조(이사장과 원장의 직무대행) ① ----- -----<u>선임된 이사</u>-----</p>	<p>-사업에 규정된 업무 중 미반영된 사업 반영 및 각 호 내용 보완</p> <p>- 원장의 유고·궐위 시 업무공백을</p>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p>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이사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진홍원의 직제에 따른 차급자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이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방지하기 위해 직제 순으로 원장 직무대행 체제 마련</p> <p>-</p> <p>-</p>